

인 재 모 집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21세기 교육·학술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정규직)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수행직무는 모집분야별 주요업무 및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정규직 21명

가. 공개경쟁채용: 17명

구분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채용 직급	임용일	주요업무
A	교육정보 시스템운영 A	대구	7명	원급	2022. 6. 30.	· (정보기술전략계획) 응용시스템,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기술서비스 정책 수립 및 정보기술 서비스 기획 · (IT시스템관리) HW 및 SW 점검 /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사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 ·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기획 및 통합관리(PM) · (보안엔지니어링) 보안이론 실무, 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보안사고 대응
B	교육정보 시스템운영 B	광주 (광역시)	2명			
C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운영	대구	1명			· (빅데이터 수집·활용) 교육 빅데이터 발굴 및 실행방안 수립 · (교육 AI서비스 기획·운영) AI 활용 방안 발굴 및 AI 교육서비스 모델 수립
D	개인정보보호 및 결합전문기관 운영		2명			·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유·노출 점검·컨설팅 · (결합전문기관 운영) 결합신청 및 반출 심사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활용
E	교육정보 서비스운영 A		3명			· (교육프로그램 운영·상담·교수) 교원 ICT 역량 개발 프로그램 기획·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 교육 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식재산 정보조사 분석) 교육기관 저작권 교육 및 저작물 이용 상담
F	교육정보 서비스운영 B		2명		2022. 12. 31. (임금피크제 대체)	· (이러닝콘텐츠개발) 에듀테크 공교육 적용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수행 · (이러닝시스템 개발) 원격교육서비스 플랫폼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 · (이러닝과정 운영) 원격교육기관 컨설팅 및 제도·재정 지원
합계			17명	-		

※ 원근무지는 본원(대구)에 위치하나, 본원의 인력운영 및 추진 사업 여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으로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1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확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나. 제한경쟁채용: 4명

구분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인원	채용직급	임용일	주요업무
G	교육정보 시스템운영 C	대구	2명	원급	2022.06.30.	· (정보기술전략계획) 응용시스템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기술서비스 정책 수립 및 정보기술 서비스 기획 · (IT시스템관리) HW 및 SW 점검 /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사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 ·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기획 및 통합관리(PM) · (보안엔지니어링) 보안이론 실무, 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보안사고 대응
H	경영/행정	대구	2명	원급	2022. 6. 30. (임금피크제 대체)	· (인사) 인사제도 수립·개선, 공공기관 인사관리 실무(채용, 승진, 전보, 평가) · (홍보/PR) 기관 언론 대응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원근무지는 본원(대구)에 위치하나, 본원의 인력운영 및 추진 사업 여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으로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1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확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필수 자격요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기타사항 및 관련근거
공통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며, 전공, 어학성적 등에 관계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 졸업예정자일 경우 채용분야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증명서 발급 가능 시 지원 가능 - 전문학사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고졸자로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5조 및 별표2호 <임용자격기준>
제한경쟁 채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졸자는 우리 원 인사규정 '임용자격기준' 중 '수행업적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항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문을 준용

나. 공통 우대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5월 6일 18:00)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PDF)하고 등기우편(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5월 6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 채용시험 가점비율과 제출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한함
- **장애인**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5월 6일 18:00)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PDF)하고 등기우편(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5월 6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 **경력단절여성, 대구·경북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미취업자(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은 법령에 따라 우대점 부여
 - ※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A를 제외한 분야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제30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분야별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므로 대구·경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채용전형의 가점 및 우대점 근거 및 인정기준]

구분	가점·우대점 적용 대상자		근거법령	점수부여 방법
가점 적용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가점부여가 명시된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만점의 5%/10% 가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 부여
우대점 적용	자격 사항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 등)	면접전형 시 만점의 1% 가점 부여
	사회 형평 A	대구·경북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면접 전형 시 만점의 2% 가점 부여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사회 형평 B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면접전형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등의 책임)	

인정 기준	1. 가점·우대점의 인정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한다. 2.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점 적용 기준은 중복 적용 없이 최고 점수 1개 항목만 적용한다. 4. 우대점 적용 기준은 자격사항, 사회형평A, 사회형평B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해당 구분 내에서 중복 적용 없이 최고 점수 1개 항목만 적용한다. 5. 전형단계별 가점과 우대점 적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6. 상세한 대상자별 점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인정기준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장애인	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능력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 보유자
	이전지역 (대구·경북)인재	대구·경북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인 자. 다만, 이전지역(대구·경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는 제외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재학·휴학중인 자
	청년 미취업자	법령 등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경력단절여성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다.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구분	채용분야	우대사항
공개 경쟁	교육정보 시스템운영 A, B	• IT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운영	• 빅데이터,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과학, 교육) 전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우대
	개인정보보호 및 결합전문기관 운영	• 법학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ISMS-P 등) • IT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교육정보 서비스 운영 A, B	• 교육학·교육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제한 경쟁	교육정보 시스템운영 C	• IT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3. 응시방법

가. 원서접수: KERIS 채용홈페이지(keris.recruiter.co.kr)의 '채용공고'에 등록

나. 접수기한: 2022년 05월 06일(금) 18:00까지 온라인 등록

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 등록), 증빙서류(취업지원(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에 한함)

구분	관련사항	비고
공통	-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장애인 등은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경력사항에 필수 입력	
제한경쟁 채용 지원자	- 지원 자격(취업지원(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해당 여부를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하며 증빙서류 원본 문서를 지원서 마감시간(5월 6일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자 앞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붙임 2] 참고)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에만 접수 유효	<u>기재착오 및 누락시</u> <u>가점부여 등에 불리하게</u> <u>적용될 수 있으며,</u> <u>허위기재가 판명될 경우</u> <u>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u>

4. 근무 조건

가. 채용직급: 원급

※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관 제규정 위반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연봉,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우리 원 정규직 관련 내규에 의함

※ 세부내용은 알리오(ALIO) 참고

※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F,H 분야)는 최초 1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확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다. 근무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A, B, C 분야 근무지는 기관 인력 운영 방향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타 지역(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원칙

5.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전형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발령
5월 6일 18:00까지	5월 16일	5월 21일 (대구)	5월 25일	6월 7일 ~ 6월 10일	6월 17일 ~ 20일	6월 30일 /12월 31일

※ 교육정보 서비스운영 B 분야(총 2명) : 2022. 12. 31. 임용 예정

※ 합격자 발표는 상기 기간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며 일정 전반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를 선발하며, 직무 관련 교육 이수경험, 직무와 경력과의 관련성/직무수행 발전가능성 및 기타 직무 수행역량 등을 평가

※ 서류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검사구성	평가 요소	배점비율
직무 관련 교육 이수경험	• 담당 직무에 대한 학교/직업 교육 이수여부 • 교육사항에 대한 직무관련 주요내용	40
직무와 경력과의 관련성 / 직무수행 발전가능성	• 담당 직무와 경력과의 관련도 • 직무 관련 기타활동 여부 - 직업 외적인 팀 프로젝트, 동호회, 재능기부 등 • 지원자의 장래성 및 발전가능성	40
기타 직무수행역량	• 기관의 인재상 적합 여부 • 전반적인 입사지원서의 표현성 및 논리성, 목표의식 • 어학 및 자격증 보유 여부 등	20

- 학교/직업 교육 이수여부 평가기준

채용분야	인정기준	세부 과목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A,B,C	• 아래 분야 중 최대 10개 과정 까지 기재 ①컴퓨터공학 ②정보통신 ③정보보호 등 직무관련	【붙임 1】 교육과목 참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운영	• 아래 분야 중 최대 10개 과정 까지 기재 ①빅데이터 ②인공지능 ③데이터분석(통계학) 등 직무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결합전문기관 운영	• 아래 분야 중 최대 10개 과정 까지 기재 ①정보보호 ②정보통신 ③법학 등 직무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A,B	• 아래 분야 중 최대 10개 과정 까지 기재 ①교육(공)학 ②평생교육 ③법학 등 직무관련	
경영/행정	• 아래 분야 중 최대 10개 과정 까지 기재 ①경영학 ②행정학 ③광고홍보 등 직무관련	

- 어학 및 자격증 평가기준

<자격증 평가기준>

구분	채용분야	자격 분류	자격증 평가기준		
			1수준	2수준	3수준
공개 경쟁	분야 공통	전산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SCJP, OCJP CCNA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OCP, CCNP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빅데 이터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준전문가 SQL 개발자 OCJP 정보처리산업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SQL 전문가 OCP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정보 보호	정보보호전문가 2급 SCJP, OCJP CCNA	ISMS-p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전문가 1급 CISA, CISSP OCP CCNP	변호사
제한 경쟁	경영/행정	교육	정보처리산업기사 정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정보처리기사 정교사 1급 평생교육사 1급	이러닝운영관리사
		사무 행정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회계 1,2 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세무 1,2 급 정보처리기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 위의 등급표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 해당없음 (4점), 1수준 (6점), 2수준 (8점), 3수준 (10점)

- 경영/행정 분야의 경우, 어학 평가기준과 병행 실시(반영비율 : 자격증(50%), 어학성적(50%))

※ 위의 표 이외의 자격증의 경우 위의 등급표에 준하는 자격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 인정 가능

※ 지원자가 보유한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 점수를 기준으로 부여

<어학 평가기준>

구분	채용분야	외국어능력 평가기준					
		구분	TOEIC	New TEPS	TOEFL iBT	TOEIC-S	OPIc
제한 경쟁	경영/행정	1수준	700 이상~ 800 미만	264 이상~ 309 미만	80 이상~ 91 미만	120 이상~ 140 미만	IM1 이상~ IM3 미만
		2수준	800 이상~ 900 미만	309 이상~ 370 미만	91 이상~ 105 미만	140 이상~ 160 미만	IM3 이상~ IH 미만
		3수준	900 이상	370 이상	105 이상	160 이상	IH 이상

※ 위의 등급표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 해당없음 (2점), 1수준 (3점), 2수준(4점), 3수준 (5점)

※ 외국어능력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2.05.06)을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험 성적에 한함

나. 필기전형

- 필기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필기전형은 인성 검사,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구성
- ※ 필기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필기전형 점수 중 직무수행능력 평가, 직업기초능력 평가 결과 순으로 합격자 결정

검사구성	평가 요소	배점비율
인성검사 ¹⁾	• 정직성, 책임성, 사회성,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인내성, 감정통제	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 ²⁾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50
직무수행능력평가 ²⁾	•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직무능력 평가	50

1) 인성검사는 평가도구 기준에 따라 PASS or FAIL 방식 선택

2) 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점수 산정

- 필기전형 출제 범위: 직무수행능력평가 출제 범위는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 필기전형 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다. 면접전형

- 면접전형은 역량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Presentation 면접*(40점)과 직업기초능력(30점) 및 직무수행능력(30점) 면접을 통합하여 진행
- * Presentation 면접은 면접 당일 배포된 PT주제에 근거하여 발표면접으로 진행

구분	출제 범위
Presentation 면접	• 채용 예정분야와 관련된 기관 사업, 사회적 이슈, 정책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분석 및 결과 도출이 가능한 주제
직업기초능력 면접	• 지원자의 상황, 경험, 인성, 포부 등 기초적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
직무수행능력 면접	• 담당 예정 직무와 연관성 있는 직무지식, 직무수행 관련 주제

6. 채용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 서류는 진위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평가자에 제공되지 않음

구분	제출 필요서류	비고
서류 전형	가. 입사지원서 나.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빙 서류(해당자) 다.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면접 전형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교육 이수증 등) ※ 성적증명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포함 필수 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각 1부 라. 외국어 및 수상 · 자격 · 면허 사본(입사지원서 상 외국어 및 수상 · 자격 · 면허 사항 입력자 필수 제출) 각 1부 마.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습확인서 각 1부 (입사지원서 상 경험/경력사항 입력자에 해당)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해당자) 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확인서 1부(해당자)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4]	
최종 합격	가. 이력서(사진포함) 1부 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추후 졸업증명서 필수 제출 다. 학위증명서(석사이상) 각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인 경우만 해당) 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종합병원장 발행) 아. 신원진술서(소정양식) 자. 연구실적 또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차. 임용서약서 1부 카. 기타 교육정보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증빙 서류는 채용공고 마감 시한 전까지 제출되어야 함(등기 또는 인편)

7. 기타 안내사항

- 가.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1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확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 나.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실적에 따라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 다.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본원 「직원채용업무 처리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우리 원 채용시험에 대해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라. 접수마감시한에 임박해서는 지원서 접수 폭증으로 인해 입사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시간여유를 두고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 마.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기록)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바. 정보원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 정보 및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 미제공
- 사.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마감 시한 전까지는 자유로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 아. 입사지원서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각종 증명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자.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전형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을 축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차. 각 전형별 이의가 있는 경우 본원 「인사관리규칙」 제13조의 2(채용 불합격자의 관리)에 의거, 【붙임 5】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kwanhyung@keris.or.kr)
- 카. 채용과정 중 제출 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붙임 6】 양식을 작성 및 서명 날인 하여 이메일로 제출(kwanhyung@keris.or.kr)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요청 시 제출 서류 반환(전자서류 제외)

8. 채용 관련 문의처

구분	채용분야	문의처
A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A	053-714-0203 053-714-0535
B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B	062-530-4316
C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운영	053-714-0226
D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A	053-714-0203 053-714-0535
E	개인정보보호 및 결합전문기관 운영	053-714-0299
F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B	053-714-0203 053-714-0535
G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C	053-714-0203 053-714-0535
H	경영/행정	053-714-0394

※ 채용 일정 관련 문의: 채용 콜센터: 070-4896-0800, kwanhyung@keris.or.kr

[붙임 1] 교육이수 교육과목 기준

채용분야	교육과목 기준(최대 10개까지 인정)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A,B,C	<해당분야> ①컴퓨터공학 ②정보통신 ③정보보호 등 직무관련
	이산수학, 프로그래밍연습, 컴퓨터구조론, 정보통신 융합, 전기전자회로, 자료구조, 디지털공학, 데이터마이닝,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 논리설계, 논리회로, 운영체제, 알고리즘,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실험, 설계프로젝트, 컴퓨터보안, 컴퓨터네트워크, 멀티미디어공학, 데이터베이스, 모바일소프트웨어, 회로이론, 정보통신 개론, 정보윤리 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운영	<해당분야> ①빅데이터 ②인공지능 ③데이터분석(통계학) 등 직무관련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계학습, 디지털시스템 설계, 이산수학, 디지털순차회로,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시뮬레이션, 경영과학,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분석 응용, 산업경영공학, 응용통계, 확률론, 이론통계, 선형모형, 시계열분석, 전산통계,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보호 및 결합전문기관 운영	<해당분야> ①정보보호 ②정보통신 ③법학 등 직무관련
	정보보안일반, 컴퓨터보안, 정보보호개론, 현대암호론, 프로그램 언어, 보안프로그래밍,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관리,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산수학, 확률통계, 선형대수,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SW공학, SW시스템 분석,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수사절차법, 증거법, 윈도우포렌식, 모바일포렌식, 디스크이미징, 파일복구, 정보보호개론, 암호프로토콜 등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A,B	<해당분야> ①교육(공)학 ②평생교육 ③법학 등 직무관련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성인학습 및 상담, 이러닝과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과교육론, 교육통계, 직업진로설계, 기업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지식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 법률(민법, 행정법, 물권법, 헌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 소송,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 등), 특허창출(특허정보분석, 명세서작성, AutoCAD 실습, 발명품 창작 및 실습, 특허 영어, 특허거래와 가치평가 등) 등
경영/행정	<해당분야> ①경영학 ②행정학 ③광고홍보 등 직무관련
	광고원론, 홍보원론, 광고매체론, 카피라이팅, 홍보조사실습, PR기획론, 홍보관리론, 커뮤니케이션론, 광고와 문화컨텐츠, 광고 메시지전략, 매체경제학, 매체기획, 미디어저작권, 브랜드마케팅론, 시각디자인론, 편집디자인, 경영학원론, 조직행동론,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경영(사회)통계, 재무관리, 경영전략, 조직변화, 행정법, 행정학개론, 조직론, 정책학, 행정조사방법론, 노동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과정론, 공공기업론, 행정사례분석 등

※ 학교교육은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사이트 NCS 능력단위별 교과과정을 참고

※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

※ 점수 부여 기준: 교육이수 해당없음(5점), 교육이수 1개 과정 당 1점 부여(최대 상한 15점)

※ 위의 등급표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점수 부여

[붙임 2]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세부기준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상명대 2캠퍼스(천안), 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등
- ※ 2022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 기준으로 분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판단

[붙임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관련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 및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

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삭제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법 제82조)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법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법 제83조)를 받게 되므로, 공공기관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비해당시 이하 작성 불요)	해당 ☐ 비해당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3호(공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단, 퇴직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	해당 ☐ 비해당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도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 사용, 수당·여부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3-2. 작성일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4-2.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2022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붙임 5] 채용 이의신청서

2022년 제2차 직원(정규직) 채용 이의신청서			
수험번호		성 명	
생 일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내용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